

## 2018년도 제6차 추진위원회의 소집 통지서

발 신 : 추진위원장 ( 2018.11.07 )  
수 신 : 추진위원 제위  
제 목 : 2018년도 제6차 추진위원회의 소집 통지서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유성대로730번길 37 일원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 제6차 추진위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추진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일 시 : 2018. 11. 15.(목) 16:00
- ◎ 장 소 : 대전유성신협 장대지점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86 (장대동284-13번지)  
3층 회의실
- ◎ 참석대상 : 추진위원 전원
- ◎ 회의내용
  - 제1호 안건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방안의 건
  - 제2호 안건 :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 제3호 안건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기타 안건 : 한국자산신탁 사업설명회

#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 회의참석 시 **회의자료**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07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임 은 수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유성대로730번길 37, 3층(장대동 277-9번지)



【별첨】

# 서 면 결 의 서

권리내역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번지	동	호
주 소	* 주민등록상주소 기재			
성 명		연락처		

상기 본인은 2018. 11. 15(16:00)에 대전유성신협(장대동284-13)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8년도 제6차 추진위원회의와 관련한 안건 등이 기재된 소집통보를 받았으나, 본인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본 서면결의서로 출석을 갈음하며, 당일 추진위원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 년 11 월 일

추진위원 : \_\_\_\_\_ (자필서명 또는 날인)

##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 아 래 -----

= 2018년도 제6차 추진위원회의 상정의 안 의결권 =  
(2018. 11. 15)

상정 의 안	기 표 란		비 고
	찬 성	반 대	
제1호안건 : 조합설립동의서 청구방안의 건			찬성 또는 반대 중 한곳에 기표
제2호안건 :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찬성 또는 반대 중 한곳에 기표
제3호안건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 또는 반대 중 한곳에 기표
기 타 안 건			

# 2018년도 제6차 추진위원회의 자료

▣ 일 시 : 2018. 11. 15. (목) 16:00

▣ 장 소 : 대전유성신협 3층 회의실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86

(장대동284-13번지)

☞ 회의 참석시 본 회의자료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유성대로730번길 37 (장대동 277-9번지)3층

# 2018년도 제6차 추진위원회의 상정의 안

- 제1호 안건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방안 협의의 건
- 제2호 안건 :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 제3호 안건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기타 안건 : 한국자산신탁 사업설명회

## 제1호 안건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방안의 건

안건상정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방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대B구역의 원활한 조합설립을 위하여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중인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 충족 동의를 75%이상 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방안에 대해 금번 추진위원회에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li> </ul>
의결근거	운영규정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대B구역 사업추진 예상일정(안)</li> </ul>
결정사항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방안의 건」에 대해 심의 후 의결함.

첨부.

## 장대B구역 사업추진 예상일정안

작성일 : 2018. 11. 07.

구분	날짜	요일	추진위원회	추진업무	비고
1	2018-11-01	목요일	MOU체결	한국자산신탁 업무협약(MOU) 체결	
2	2018-11-07	수요일	공문발송	분양성검토, 시공사참여의향, 현금청산확약요청공문	
3	2018-11-07	목요일	공문발송	제6차 추진위원회의 소집	
4	2018-11-15	목요일	제6차 추진위원회의	동의서 징구방안, 한자신 설명회, 선거관리 규정, 선관위구성, 사업추진일정 등	
5	2018-11-23	금요일	공문발송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6	2018-11-27	화요일	제1차 선관위 회의	조합 임원 및 대의원 모집 공고	
7	2018-11-28	수요일	임대의원 모집공고	임원·대의원 모집공고	14일간
8	2018-12-07	금요일	공문발송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9	2018-12-12	수요일	입후보등록 마감	임원·대의원 입후보등록 마감	
10	2018-12-12	수요일	제2차 선관위 회의	입후보자 자격 검토	
11	2018-12-13	목요일	공문발송	제7차 추진위원회의 소집	
12	2019-01-08	화요일	제7차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상정안건(정관, 업무규정, 선관위규정, 예산, 사업계획, 임대의원 선출 등)	
13	2019-01-09	수요일	창립총회책자 인쇄	책자, 서면, 위임장 등	
14	2019-01-11	금요일	등기발송	창립총회 소집	
15	2019-01-14	월요일	홍보요원 활동개시	서면결의서및동의서징구	
16	2019-01-26	토요일	창립총회 개최	유성문화원	
17	2019-01-30	수요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유성구청	30일 이내
18	2019-02-21	목요일	조합설립인가	유성구청	3주예상

※ 상기 사업추진 예상일정안은 예시로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2호 안건 :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안건상정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	<p>- 장대B구역 조합설립에 필요한 조합의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의 선출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안)을 제정 결의하여 시행코자하며 차기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p>
의결근거	운영규정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첨부서류	- 선거관리규정(안)
결정사항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에 대해 심의 후 의결함.

첨부.

# 선거관리규정(안)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조합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임원의 선출 및 조합정관 제24조의 대의원선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원)

“임원”이라 함은 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 제3조(대의원)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정관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의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 제4조(적용 원칙)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조합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선거공고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설치장소는 조합사무소(추진위원회 사무소)에 둔다.

### 제6조(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임기)

- 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과 선거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피선출권이 있는 임원 및 대의원(추진위원)중에서 5인 이하를 대의원회의(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원에 입후보등록하고자 하는 추진위원(대의원)은 위원 및 위원장이 될 수 없다.(오기수정)

-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관련 선거종료 후 1개월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조합정관 제9조에 의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소유자.

2. 조합정관 제11조에 해당되는 조합원.
3. 조합정관 제17조 제1항에 의거 해임된 자.
-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조합정관 제11조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할 때
  2. 피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업무 및 자격 심사
3. 공정한 투표 및 개표관리
4. 기호 배정 관리
5.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6. 투표용지의 유·무효 심사
7. 각종 선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심사
8. 불법선거운동의 예방 및 단속
9.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단,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2장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제9조(조합장의 선출)**

조합장은 조합정관 제15조 제2항에 의거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이하 투표에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0조(이사 선출)**

- ① 이사는 조합정관 제15조 제2항에 의거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이하 투표

에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임기 중 궐위된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보궐선임한다.
- ③ 상근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 조합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선출한다.

### 제11조(감사 선출)

- ① 감사는 조합정관 제15조 제2항에 의거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이하 투표에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임기 중 궐위된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보궐 선임한다.

### 제12조(대의원의 선출)

- ① 대의원은 조합장이 이사회의를 거쳐 입후보등록공고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단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대의원은 추진위원회 결의를 거쳐 입후보등록공고한다.)
- ②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 제 3장 후보자

### 제13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조합원으로 한다.

- 1. 조합정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2. 조합정관 제11조 또는 **제17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오기 정정)
- 3.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 단, 입후보 마감일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는 가능함.)
- 4. 입후보자는 임원 및 대의원에 복수로 입후보할 수 없다.
- 5. 임원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 목적의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또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 6. 공유 또는 대표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된 자

#### 제14조(조합원의 후보자 추천)

① 후보자의 추천은 위원회가 교부한 추천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천을 받아야 하고,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은 사용할 수 없다.

1. 조합장 후보자의 추천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자필서명 또는 지장, 생년월일 기재)을 받아야하고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받아서는 안 된다.
2. 감사 후보자의 추천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 20인 이상의 추천(자필서명 또는 지장, 생년월일 기재)을 받아야하고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받아서는 안 된다.
3. 이사 후보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 20인 이상의 추천(자필서명 또는 지장, 생년월일 기재)을 받아야하고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받아서는 안 된다.
4. 대의원 후보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 3인 이상의 추천(자필서명 또는 지장, 생년월일 기재)을 받아야하고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후보자 추천은 직급별 중복추천이 불가하며 중복으로 추천한 경우 해당 추천인의 중복추천은 무효로 한다.

③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의 추천은 무효로 하며 이로 인해 후보자의 추천수가 부족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입후보등록은 무효로 한다.

#### 제15조(입후보 등록)

① 임원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소정양식)
2. 입후보 추천서 1통(소정양식)
3. 입후보자의 소견서 1통 (소정양식)
4. 이행각서 1통 (소정양식)
5. 반명함판 사진 1매
6. 주민등록 초본 1통(최근 1개월 이내 발급)
7. 가족관계증명서
8. 조합원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② 입후보등록전에 조합임원 및 상근직원이 조합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

우, 입후보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관련 업무를 정지한다.

#### 제16조(등록무효·사퇴)

- ① 후보자가 입후보등록 후 제13조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명된 경우 입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② 입후보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입후보등록을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가 입후보등록을 철회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4조 1호·2호·3호·4호의 추천인이 미달하게 된 때에는 입후보등록을 무효로 한다.

#### 제17조(후보자의 기호결정)

- ① 임원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기호배정은 입후보등록 마감 후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입회하에 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여 추천으로 결정하며, 추천에 불참한 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해 배정한다. 다만,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별도의 기호배정을 하지 아니한다.
- ② 대의원 후보자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 ③ 기호가 정해진 후 후보자의 사망, 등록취소,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않는다. 단, 구분할 수 있게 표기한다.(예 : X등)

#### 제18조(선거운동 금지, 제한)

- 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위를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거운동은 명함·전화(송화자와 수화자간의 직접 통화하는 방법)·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등은 제외한다)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5의2. 선거운동원은 1인으로 하되,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조합원 중에서 선정한다.

6. 기타 관련법령·정관 또는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제1항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적발 또는 선거권자의 고발에 의하여 당락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후보등록이 무효가 되며, 당선이 결정된 후에라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적발과 선거권자의 고발은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는 후보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다만, 후보등록 무효 및 당선 무효 결정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한다.

## 제 4장 투표와 개표

### 제19조(선거 및 공고)

입후보자 등록기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등록장소는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는 조합정관 제20조의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이하 투표에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 제20조(임원 선거 투표방법)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단, 보궐선임은 제외한다.

- ① 선거는 총회 당일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실시한다.
-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단, 직접투표가 불가할 경우 서면결의서로 투표할 수 있다.
- ③ 2항에 의한 투표는 선출 인원수 이내로 투표하여야 한다.

### 제21조(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이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2,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22조(투표)

- ① 선거인은 선거당일 총회참석자 명부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하고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② 총회참석자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합원과 총회참석자 명부에 등재되었

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은 투표할 수 없다.

- ③ 선거인 잘못으로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재교부 할 수 없다.
- ④ 선거인의 유고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에 한하여 대리 투표 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선거권자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23조(개표)

- ① 개표사무는 위원장이 지명한 개표 종사원이 담당한다.
- ② 후보자별 개표 참관인은 조합원 중 각 2인으로 둘 수 있다.
- ③ 위원은 위원장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검열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24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선출인원 수를 초과한 후보자란에 기표를 한 것.
- 4. 어느 후보자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제25조(당선인 결정)

- ①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득표자 중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동 득표자 수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단독후보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 ③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거나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

### 제26조(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조합정관 제20조의 총회에서 임원 정족수를 선출하지 못하였을 때
  -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을 때
  -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제1호에 해당될 때

- ② 재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 제5장 이 의 신 청

### 제27조(이의신청)

-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심사하되 이의신청자와 피신청자를 불러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정 시에는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본 규정은 추진위원회의에서 제정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추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② 본 규정은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본 선거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관계법령 및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 제3호 안건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안건상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대B구역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창립총회에서 선출 예정인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의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li> </ul>
의결근거	<p>운영규정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p> <p>선거관리규정(안) 제6조(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임기)</p>
첨부서류	- 없음
결정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심의 후 의결함.

## 기타 안건 : 한국자산신탁 사업설명회

기타안건	한국자산신탁 사업설명회
제안사유	<p>- 장대B구역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01일 장대B 구역 재개발사업이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한국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은 업무협약 당사자로서 추진위원님들께 장대B구역의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자신의 사업설명회를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의결근거	
첨부서류	
결정사항	한국자산신탁 사업설명회 진행